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11.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0월 4일, 진선미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3.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2023.11.20.) 상정, 심사

제4차 조세소위(2023.11.22.) 상정, 심사

제5차 조세소위(2023.11.24.) 상정, 심사

제7차 조세소위(2023.11.29.) 상정, 심사

제8차 조세소위(2023.11.30.)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3.11.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선미의원)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중전에는 중동국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해외건설업 플랜트 공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오히려 국내 모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있음.

특히, 국내 모회사가 해외지점으로 진출하였으면 동일한 손실에 대하여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도 추가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이러한 세금부담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류성걸)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과 정부안(24163) 등 149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